

대출거래 추가약정서 (주택담보대출용)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앞

채무자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와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 조 대출금의 지급

채무자 본인은 은행과의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주택 구입자금에 충당할 경우에는 동 대출금의 수령할 권한을 은행이 지정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제 2 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금액의 (%) 범위 이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3 조 대출 실행의 중단

- 본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주택 구입자금에 충당할 경우, 채무자가 대출 실행일의 전일까지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실행 확정 버튼을 누르면 대출 실행일 오전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실행 확정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주택 구입자금에 충당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대출 실행일에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실행 버튼을 누른 시점에 곧바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추가하여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서면 통지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본 대출의 목적이 타행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대출금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본 대출의 목적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임차보증금(또는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대출금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임차인(전세권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임차인(전세권자)이 속한 세대가 전출하거나 임차권(전세권)을 말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5 조 채무의 승계 및 인수 금지

담보부동산의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승계 또는 인수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성명 (인)		
주소	년	월 일

kakaobank

2022.01.21. 시행

※ 이 약정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카카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